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(김생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135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:김생환, 권영희, 김경우,

김태호, 박순규, 오현정, 임종국, 장인홍, 전병주, 정진술, 추승우, 홍성룡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사회단체" 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4조(지원제외 대상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.
 - 1. 영리·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 - 2.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
 - 3.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 - 4.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
- 제5조(지원범위)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6조(지원신청)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원사업 선정)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2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원약정)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업보고)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, 사업비 정산내역,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업평가 등)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.
 -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·연수,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.

- 제11조(실비보상)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- 제12 (준용)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 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 회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